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의견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5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【장림동 914-8 부영개발】

-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등을 파쇄·선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코자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【장림동 924일원 대성기업】

- 주물 제작 후 발생하는 폐주물사를 재생처리하여 건설용 자재(벽돌, 레미콘 모래 등)로 재활용코자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【장림동 914-8 부영개발】

-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(일반폐기물)
- 위치 : 장림동 914-8번지
- 용도지역 : 전용공업지역
- 면적 : A = 2,553m²
- 신청자 : (주)부영개발 김동진

【장림동 924일원 대성기업】

-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(일반폐기물)
- 위치 : 장림동 924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전용공업지역
- 면적 : A = 2,733m²
- 신청자 : (주)대성기업 손호동

3. 관계법령

-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
 -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 입안(폐지)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.